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2000. 4. 18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제16차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6002호, '99. 8.31)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12.31 개정 공포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의수당의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므로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구의회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용어가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 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의수당” 을 각각 “회기수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회의수당</u>” 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p> <p>1.(현행과 같음)</p> <p>2. “<u>회기수당</u>” ----- ----- <u>회기수당</u> -----</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생략)</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 의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1년분에 상당한 금액</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보상금지급기준)①(현행과 같음)</p> <p>1. ----- ----- ----- <u>회기수당</u> ----- ---</p> <p>2. ----- ----- <u>회기수당</u>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